

특별통관 업체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박민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pecial Customs Clearance Operator Management System

Min-Gyu Park^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ha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24, Revised 21 June 2024, Accepted 27 June 2024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problems in managing special customs clearance companies that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and seek legal solu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tries to analyze and th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special customs clearance and suggest alternatives since the management of the special customs clearance system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Administrative Rules.

Findings - The definition of a consignment carrier under the Customs Ac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and the subject of registra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Customs Act and Administrative Rules. Article 2 of the Customs Act, the definition of consignments and the subject of registration of consignment forwarders should include international logistics forwarders who “arrange logistics of import and export cargo”.

In the E-commerce Administrative Rules revised in July 2023, the registration of e-commerce companies subject to special customs clearance, the registration of companies with preferential customs clearance and notification of changes, and the provision of preferential customs clearance can be seen as new legislation beyond the mandate of the Customs A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is time to allow recipients and agents to submit customs clearance lists to protect the rights of goods recipients.

Keywords: Consignments, Consignment Carriers, E-commerce Companies, Preferential Customs Clearance, Special Customs Clearance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I. 서론

관세법령상 특별통관은 관세법 제241조와 제244조의 일반통관(수입신고)에 대한 예외이며, 전자상거래 물품·택송품·우편물이 그 대상이다. 관세청(2024)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자상거래 물품

* 이 논문은 2023년도 인하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a First Author, E-mail: trade@inha.ac.kr

© 2024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자상거래물품(건수 기준)은 면세 통관 비중이 98%, 과세통관 비중이 2%이다. 한국 일선 세관에서 통관하는 탁송품과 우편물 대부분이 알리,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직구를 통해 사들인 물품이다. 그런데, 해외 수출자가 이용하는 운송업체(특송업체 또는 국제우편)에 따라 같은 물품일지라도 관세 법령의 조문과 고시가 다르게 적용되고, 면세 통관·간이신고(통관)의 한도·절차 그리고 통관 우대사항이 달라진다. 특히 조선일보(2024)를 포함한 국내 언론에서는 소위 '알테쉬'라고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한국 특별통관 법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어 한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관세법령은 중국 전자상거래 제품을 막을 수 있는 1차 방어선이다. 그러나 한국 관세법령은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의 편법 수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특별통관 근거인 관세법 제254조, 제254조의2, 제256조부터 제261조와 관세청의 탁송품 고시, 전자상거래물품 고시, 국제우편물 고시는 모두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소관이다. 그런데, 3개 고시 모두 상위법령의 근거가 불분명한 사항이 많고, 통관 한도와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해외 수출자가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따라 같은 조건의 물품에 대하여 다른 고시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 국민, 운송업체, 통관업체, 일선 세관 통관 담당자 모두에게 혼동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세법령상 특별통관 관련 규정과 관련 고시를 분석·연구하여 관세법령에 정할 것과 고시에 정할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통관 관련 3개의 고시의 통일과 역할을 개편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특히 관세법령에 특별통관 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분리·독립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은 보세운송업자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다. 관세법령에서 전자상거래업체 등록과 통관우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2023년 7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고시에서 등록과 통관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통관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조원길 (2022)은 디지털 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 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 통관 관련 선행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연구 결론에서 목록통관에서 관세 탈루와 허위신고, 우편·특송통관에서 마약류 수입, 우편물 통관목록 미제출, 구매대행업체의 탈세 등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우편·특송의 간이신고 기준 일원화,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통관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2008년부터 계속 이루어졌지만, 개선된 것은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관세법령·고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태웅, 서보국 (2020),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관세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시가 많다. 그러나 관세청의 많은 고시가 법률유보를 포함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통관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특별통관 법제 연혁과 특별통관 업체 관리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고, 법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II. 탁송품 특별통관 업체의 목록통관

1. 탁송품 운송업자의 목록통관

가. 연혁

정부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자 2001년에 관세법 제254조를 신설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 통관 제도를 마련했고, 2005년에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정부는 2022년에 관세법상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고, 신설된 관세법령의 시행에 맞춰 전자상거래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2호, 이하 ‘전자상거래 고시’라 한다)를 전면 개정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4호, 이하 ‘특송품 고시’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고시보다 1년 이른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관세법상 특송품 특별통관 규정은 2008년에 관세법 제254조의2가 신설되었고, 2009년 4월 1일부터 법률 제9261호 및 부칙 제1호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2008년 12월 관세법 개정 이유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특송품을 세관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다.¹⁾ 정부는 관세법상 법적 근거 없이 5년간 특송품 고시를 제정·운영했다.

우편을 통한 특별통관은 1949년 제정 관세법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통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23호, 이하 ‘우편물 고시’라 한다)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나. 목록통관의 문제점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과 특송품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법인 특송품 운송업자만 목록통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특송품 운송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위탁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을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54조의2에 근거한 특송품 운송업자에 의한 목록통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²⁾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관은 특송품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특송품 운송업자를 통한 독점적인 통관목록 제출하도록 하였다. 세관은 통관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보다 특송품 운송업자에게 통관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정된다.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일반 수입신고는 화주(수입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입신고보다 간단한 통관목록 작성·제출은 특송품 운송업자만이 할 수 있다. 통관목록은 특송품 고시 [별지 4] 서식에 품명·주소 등 최대 32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특송품 고시[별표 3]에서 세부적인 통관목록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르면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 수입 의무자는 62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6개 내지 7개이다.

통관목록은 제출의무자 본인(화주·수취인)이 작성·제출할 수 있음에도,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특송품 운송업자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통관목록 제출의무자의 제출 의무 이행에 있어서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행위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의무 이행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송품 운송업체의 독점적인 통관목록 제출 제도는 통관목록 제출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할 수 있는 통관목록 제출을 특송품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시행해야 한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2항에서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범위와 통관목록에 포함되어야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신고서 서식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있지만, 요즘 사용 빈도가 많은 통관목록 서식은 특송품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특송품 운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을 제출하도록 하면, 물품 수출자는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다.

1) 특송품 특별통관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소액 특송품 통관목록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만약 운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세관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부는 2010년에 세관공무원에 의한 특송품 검사를 추가했는데, 그 당시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특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특송품을 검사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2.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

가.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 관리

탁송품이란 화주가 ‘항공기·선박·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출 또는 반입하는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말한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에서는 항공기·선박·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 가운데, ‘탁송품 목록통관을 하는 자’를 ‘탁송품 운송업자’라고 한다. 탁송품 고시 제2조 제1호는 ‘탁송품 목록통관을 하는 자’를 ‘특송업체’라고 한다.³⁾

관세법 제222조는 탁송품 운송업 등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세화물 취급을 하려는 자는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하는 자들이다.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

탁송품 고시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탁송품 운송업자’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그런데 탁송품 고시 제3조에서는 ‘탁송품 운송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항공사업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문제점

탁송품 고시 제3조의 문제점은 첫 번째,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시에 새로이 추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둘째, 탁송품 고시 제2호의 등록 대상을 제1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사항이 아니다. 탁송품 고시 제3조에서 제1호의 상업서류송달업자는 ‘항공사업법’이라는 근거법이 있는데, 제2호의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근거법이 없다. 화물운송주선업은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의 운송주선업은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국내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자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탁송품 고시 제3조 제1호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려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자로 해야 한다.

탁송품 고시 제2조 제1호의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사업법상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한 자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사업을 하는 자를 관세법에 따라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등록하는지와 등록요건에 대하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 탁송품 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탁송품 운송업자의 등록과 탁송품 운송업자의 통관목록 제출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탁송품 운송업자의 등록은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3) 본 연구에서는 고시와 실무에서 사용하는 ‘특송업자’ 대신에 관세법상의 용어인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

필요성이 크므로 국회의 법률로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탁송품 운송업자의 업무, 등록요건 등 탁송품 운송업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해야 한다.

다.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 요건과 위임한계 준수 여부

관세법 제223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3항에서는 보세운송업자 등 보세화물 취급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탁송품 고시 제3조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등록 요건을 다시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하고, 관세법 제223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인은 탁송품 운송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23조는 보세운송업자·탁송품 운송업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등록 요건을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3항에서는 운송 수단·설비, 자본금·예금 등 여러 관세법에 없는 추가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것은 수권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 가능성에 위배된다.⁴⁾ 관세법 제2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등록요건의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누구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자본금, 설비 기준 등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Kwon and So, 2020). 그러나 관세법 제22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관세법 제23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관세청장이 자본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세운송업, 탁송품 운송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여러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정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세법 제223조의 등록요건에 법인(자연인 등록배제)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연인에 대한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배제는 관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고, 예측가능하지도 않다.

Ⅲ.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업체 우대

1. 전자상거래업체와 통관우대업체 등록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고시 제3장은 '통관우대'이다. 전자상거래 고시 제13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우대를 할 수 있다.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관우대업체 신청을 하려면 전자상거래 고유부호가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고유부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를 받으려면, 통관우대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등록요건 가운데 하나가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유부호는 목록통관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해외판매자(통신판매업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통신판매중개자는 목록통관을 할 때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상호를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도 전자상거래 고시에서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등록제도 두 개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은 등록요건이 없고, 등록을 신청하면 고유부호만을 부여하므로 고유부호 신청으로 변경하고, 통관우대업체는 등록하도록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4) 예측 가능성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통관우대업체 우대 제도의 문제점

가. 통관우대의 관세법령상 근거 부재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통관우대’라는 용어가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가 통관대상물품·신고절차·납세·검사이므로 제5호의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통관에 관한 사항인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통관우대’에 관한 사항이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관세법에서 우대에 관한 사항은 제25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관세법령상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이다. AEO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1호)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공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부 혜택은 크지 않다.⁵⁾ AEO 인증을 받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혜택을 구체화하여 AEO 관리체계 안에 포함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상거래 고시의 위임한계 준수 여부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하위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제25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등록, 관리, 통관우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 전자상거래 고시는 수권 규정인 관세법 제254조 및 시행령 제258조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관세법 제25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서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거래 물품 또는 업체’,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관세 등의 납부 방법’, ‘물품검사방법’,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2022년과 2023년 개정된 관세법령에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관세법령에서 특별통관 대상 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업체 등록, 통관우대업체 등록 및 변동 신고, 통관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이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면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하위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탁송품 통관업체를 포함한 특별통관 업체의 등록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고시에는 특별통관 업체 등록, 통관우대, 통관우대업체 등록과 관리 등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5) AEO 고시(별표 2)의 혜택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이다.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납세의 전제가 되는 수입신고에 대한 예외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하위법령이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관세청장이 ‘특별통관 대상 거래 물품·업체’와 ‘수출입신고 방법·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고시 제2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이다. 고시 제2장은 기존 탁송품 고시와 국제우편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출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임범위라고 할 수 있다.

IV. 시사점과 제도개선 사항

1. 특별통관 등록 대상 및 등록 요건 구체화

가.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 대상 확대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탁송품 고시 제3조에서 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개정하여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를 (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로 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의 등록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수입신고보다 간단한 통관목록 작성·제출은 통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관목록 작성을 대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관세사와 일반인도 할 수 있다. 탁송품 운송업자를 통관목록 작성·제출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물품 수취인·관세사 등과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도 있고, 통관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관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물품수취인과 그의 대리인도 통관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물품수취인과 그의 대리인도 운송업자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1.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 대상 확대

관세법 현행	관세법 개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u>물품 수신인(그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운송업자(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u>
<단서신설>	<u>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의 등록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u>

탁송품 고시에서 상업서류송달업자에 추가하여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 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도 탁송품 운송업자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은 물류정책기본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⁶⁾ 실무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탁송물 운송업자로 등록한다.⁷⁾ 따라서 탁송품 정의와 탁송품 운송업자 등록 대상에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해야 한다.⁸⁾

나. 등록요건 법률유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할 때,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관세법 제223조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자본금·시설기준 등을 등록요건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모법에 근거가 없는데 등록요건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은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에 있는 등록요건 가운데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3항 제3호는 법에 바로 규정하고, 시설·자본금 요건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야 한다. 현재 시설이나 자본금은 개별 고시에서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세부 등록요건을 알기 어렵다. 탁송품 고시 제3조에 따르면 탁송품 운송업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3억 이상 이어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보유 장비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탁송품 고시에서 운송수단이나 설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없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을 할 때 충족하여야 하는 허가 기준이나 등록요건을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2. 등록요건 법률유보

관세법 현행	관세법 개정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4.(생략) <신설>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4.(생략)
<신설>	5.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법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할 것
	6. 보세운송 등에 필요한 운송수단·설비,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갖춘 것

2. 법령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통관우대

가.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등록, 전자상거래 고시 제11조 및 제17조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구매대행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이나 상업서류 송달업을 겸업하면,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등록도 해야 한다.

6) 상법 총칙 제2편 제8장에서 운송주선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이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7) 과거 화물유통법상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관세법 제135조와 제136조의 화물운송주선업자도 국제물류주선업자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증개자, 배송대행업자는 전자상거래 고시 제11조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구매대행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증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지만, 보세운송업자 등 다른 보세화물 취급업자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해서 모든 전자상거래업체를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3.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관세법 현행	관세법 개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생략> 1. - 6. <생략>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등 제254조제2항의 전자상거래업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전자상거래업체 통관우대 사항의 법률유보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등록이 아닌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하고, 관세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우대는 전자상거래 고시가 아닌 법률에서 규율해야 한다. 통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전자상거래 고시가 아닌 관세법령 체계 내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적재화물목록은 입항하기 전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관세법 제135조 제2항 단서 및 제13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AEO로 공인된 업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 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업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는 선사 대신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55조의3 제1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통관우대 관련 첫째 제안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적하목록 제출을 허용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관상의 우대를 하는 방법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우대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개정이 용이하고, 앞에서 살펴본 위임근거 명확화 원칙에도 부합한다.

둘째, 관세법 제254조에 항을 신설하여 ‘제255조의2 제1항에 의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신속통관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상 우대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고시에 있는 우대사항을 활용할 수 있어 간단하지만, 수익적 행위를 고시에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시에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AEO 고시 제3조 제6호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 공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AEO 고시를 개정하여, 공인 부문을 ‘택송품 운송업’으로 개정하여야 하는데, 화물운송주선업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공인 부문 및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AEO 고시 [별표 2]를 개정하여 공인받은 택송품 운송업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WCO 주도로 만들어진 AEO 제도를 가장 잘 이행하는 나라이다. 전자상거래업체를 고시에 따라 통관우대를 하는 것보다 AEO 인증을 받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하여 통관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EO 고시 제3조 제10호를 신설하여 전자상거래업체를 공인 부문에 포함하고, [별표 2]에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혜택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고시 제16조부터 제20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혜로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고시 제15조를 개정하여 AEO 인증을 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대하여 스마트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AEO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Table 4. 통관우대 법률유보

관세법 현행	관세법 개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생략>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물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물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전자상거래업체'라 한다)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④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단속과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1안)	⑦ 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통관 등 통관절차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① - ⑤(생략) <신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① - ⑤(현행과 같음) ④ 법 제254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통관 실적이 있는 자
<신설>(2안)	⑦ 제255조의2 제1항에 의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신속통관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상 우대를 할 수 있다.

3. 탁송품 운송업자 정의 개정

관세법 제2조 제18호에서 '탁송품'은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반입·반출한 물품이라고 정의한다. 관세법 제254조의2에서는 탁송품 운송업자를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관세법에서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22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상업서류 등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135조 제2항 단서와 제136조 제3항 단서에서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도 적재화물목록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탁송품 운송업자라는 의미이다. 탁송품 고시 제3조에서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한 자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한 자도 탁송품 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상 대부분의 탁송품 운송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2조 탁송품의 정의에 상업서류송달업자뿐만 아니라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5. 탁송품 정의 명확화

관세법 현행	관세법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7. <생략>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7. <현행과 같음>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V. 마치며

중국의 알리, 테무 등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중국 내수가 침체하자 재고를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 테무는 전자제품과 잡화 등을 주로 수출하고, 쉬인 등은 의류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지마켓,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중국 수입품과 유사 물품을 생산하는 한국 중소기업들까지 중국의 저가 제품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특별통관 관세법령과 관련 고시는 신속한 통관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신속한 통관으로 인해 일부 개별 수입자의 편익이 증대된다. 그러나 신속한 통관으로 인한 대부분의 혜택은 중국 수출업자, 편법·탈법적으로 상용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중국 수출업자들의 탁송 물품을 통관하는 물류업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일반 물품과 달리 안전과 검역을 거치지 않고, 국가의 통제망에서 벗어난 물품의 신속한 통관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내 생산업자와 물류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탁송품에 대한 일반 수입 물품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법령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탁송품 수입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들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탁송품 운송업의 등록을 고시가 아닌 관세법령에 규정하고, 등록 요건에 법령준수와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령에 근거 없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과 통관 우대에 관한 사항도 AEO 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우대를 한국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AEO 제도에 편입시켜, 국내의 전자상거래업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편입 후에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AEO 평가 항목도 법령준수와 소비자 안전과 불만 처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탁송품 운송업자의 독점적인 통관목록 작성·제출 허용은 물품 수취인·관세사 등과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고 통관목록 작성·제출 관련하여 물품 수취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품수취인과 대리인도 통관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품 수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 수입신고와 형평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고시에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업체 등록, 통관우대업체 등록 및 변동 신고, 통관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구매대행업자만 관세법상 등록 의무가 있고,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배송대행업자는 전자상거래 고시 제11조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한다. 모두 관세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곽병근, 송희영 (2008),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0(3), 69-88.
- 곽은현 (2020), 특송물품 중 간이통관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무역보협연구*, 21(1), 183-199.
- 귀카이위, 이태희 (2023),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CISG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아태비즈니스연구*, 14(2), 201-212.
- 권태웅, 서보국 (2020),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법제연구*, 59, 295-299.
- 정우경, 이서영, 김태인 (2020), 화장품 산업의 대중국 수출전망에 관한 연구: 관세 및 비관세조치 대응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연구*, 11(1), 145-165.
- 조원길 (2022),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1), 83-104.
- 최장우 (2006), B2C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7(1), 229-253.
- 홍재성, 이용근(2011), 중국 해관의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1), 74-90.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동향” Available from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accessed May 24, 2024)
- 조선일보, “1차 방어막도 없다… 쏟아지는 ‘中 헐값직구’에 中企 공장 다 문닫을 판”, 2024.3.29. Available from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4/03/29/4VT3TSRV2RCPLEG6YU3NJ6S7JM/> 검색일 2024.3.30. (accessed May 24, 2024)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53%,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 입어”, 2024.3.25. Available from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6917&mnSeq=207>>, (accessed May 24, 2024)